



제391회국회(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838호)
- 강훈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123호)
- 이소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434호)
-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588호)

2021.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채수근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검토의견	6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김성원 의원안 제 17조의3)	6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사전검토·수수료 및 신고업무 위탁 (강훈식·이소영 의원안)	15
3. 구역전기사업자 의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기준 상향(이학영 의원안 제92조의2제1항)	28
※ 참고자료	34
1.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34
2.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35

I . 제안경위

【김성원 의원안】

1.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1. 7. 30.
3. 회부연월일 : 2021. 8. 2.

【강훈식 의원안】

1. 발 의 자 : 강훈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1. 8. 19.
3. 회부연월일 : 2021. 8. 20.

【이소영 의원안】

1. 발 의 자 : 이소영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1. 9. 3.
3. 회부연월일 : 2021. 9. 6.

【이학영 의원안】

1. 발 의 자 : 박대출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1. 9. 15.
3. 회부연월일 : 2021. 9.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김성원 의원안】

최근 몇 해간의 기록적인 폭염과 폭한이 계속되고 있어 냉·난방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노인복지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의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는 취약계층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 및 감면대상자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폭염·폭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폭염 및 폭한기의 냉·난방기 사용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3 신설).

【강훈식 의원안】

현행법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해당 공사계획서의 기술기준 및 검

사 방법, 절차 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고, 전기설비 공사의 안전성을 제고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자가 제출하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공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 및 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5항 신설 및 제97조).

【이소영 의원안】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가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그 공사계획을 신고하도록 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사용전검사에 합격해야 전기설비를 사용할 수 있음.

그런데 지자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서의 검토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사용전검사 이후 공사계획을 다시 신고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함.

참고로 최근 3년(2018~2020년)간 각 시·도에 신고된 공사계획은 모두 29,476건인데, 이 가운데 2,518건(8.5%)이 사용전검사 단계에서 설

계미흡, 용량선정 부적정 등의 문제가 발견됐음.

이에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등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여 업무 처리의 전문성·효율성 및 전기사업자의 편의 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9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이학영 의원안】

현행 전기사업법은 분산형전원을 전력수요지 인근에 발전설비를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하는 설비로 정의하고, 하위법령에서 50만KW이하 용량의 집단에너지사업자와 구역전기사업자가 설치한 발전설비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음(전기사업법 제2조제21호).

그러나 전기사업법은 제92조의2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일정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그 발전설비용량을 30만KW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분산형전원의 설비범위와 맞지 아니하고, 산업단지에 필요한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사업은 종전의 유연탄을 활용한 석탄열병합발전방식에서 친환경적인 LNG나 수소가스터빈을 사용하는 복합화력발전으로 전환하는 추세이나 복합화력발전은 특성상 지역에 필요한 열공급량 대비 전력생산량이 큰 특성이 있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50만KW 이하로 상향하여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하고,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친환경연료로의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통한 온실가스감축 모도와 함께 탄소중립목표의 이행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2).

Ⅲ. 검토의견

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 마련(김성원 의원안 제17조의3)

김성원의원안 제17조의3은 「노인복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률과 전기판매사업자의 공급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 및 대상을 동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임.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7조의3(전기요금의 감면)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노인복지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경로당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

현행	개정안
	<u>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u>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기요금의 감면이 필요한 사람 또는 시설 7.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폭염·한파 등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및 기준, 감면의 내용 및 그 밖에 전기요금 감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전기요금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닌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약관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작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확정됨¹⁾.

1) 「전기사업법」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도 동법 및 시행령이 아닌 한전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공급약관에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복지할인제도 및 전통시장, 초중고교 등에 대한 특례할인제도²⁾를 규정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한전의 별도 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시설부담금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표 2] 한전 약관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지원 현황

구 분	피해유형	특별재난지역	지원액(억원)
'20년	태풍(마이삭·하이선), 호우	76개(삼척 등)	7.3
'19년	강원산불, 태풍(링링, 미탁)	18개(속초 등)	6.4
'18년	호우, 태풍(솔릭, 콩레이)	17개(영덕 등)	0.5
'17년	충청권 집중호우, 포항지진	4개(청주 등)	16.7
'16년	경주지진, 태풍(차바)	8개(경주 등)	10.5

자료: 한전

개정안이 제1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열거하고 있는 요금 감면의 대상은 현재 한전의 복지할인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감면제도를 통해 전기요금을 할인받고 있음.

개정안 제17조의3제1항제7호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전기요금을 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참고자료 :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참고자료 :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면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노인복지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등 다른 법률에 전기요금 감면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표 3] 다른 법률의 전기요금 감면 규정 현황

법률명	조항	감면대상	실제 감면 여부	한전약관 규정여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제6호 (임의규정)	재난피해 시설 및 주민	○	○
노인복지법	제37조의3 (임의규정)	경로당	○ (사회복지 시설)	○ (사회복지 시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의3 (임의규정)	기숙사	X	X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임의규정)	기숙사	X	X

한편, 개정안 제17조의3제2항은 전기판매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폭염·한파 등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할인제도 포함)은 약관을 통해 전기판매 사업자와 소비자간 계약으로 정하는바, 전기판매사업자의 검토를 통해 약관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상장사인 한전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거쳐야 하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임.

또한 가스, 난방 등 주요 공공요금의 감면근거도 법률이 아닌 사업자 약관 또는 공급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감면제도와 대상을 법령에 직접 규정할 경우, 요금 조정에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어 요금체계 운영의 탄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이러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은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다음의 사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은 이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순히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계약관계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현재와 같이 요금감면의 구체적 대상을 법률과 시행령에서 전혀 규정함이 없이 한전의 약관으로만 정하도록 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이며, 오히려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률과 시행령에 그 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 내용을 보다 쉽고 명백하게 알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측면이 있음.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통신요금, 교통비용, 상수도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 대부분은 법령에 요금 감면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인지 또는 강행규정인지 여부는 각각 상이함.

[표 4] 공공요금 감면 근거

구 분	감 면 근 거		비 고
전기요금	공급약관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강행규정)
열요금	공급규정	•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	(임의규정)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법령	• 「방송법」 제64조 및 시행령 제44조	임의규정
통신요금	법령	•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2조, 제36조	임의규정 (제4조 보편적 의무에 따른 장애인·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은 강행규정)
교통비용	법령, 조례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7조 • 「유료도로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임의규정
가스요금	공급규정 행정규칙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강행규정
상수도요금	법령, 조례	• 「수도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53조의2	임의규정
하수도요금	법령, 조례	• 「하수도법」 제65조 및 조례	조례에 따라 상이
문화활동비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17조	임의규정

주: 문화활동비는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공원, 고궁, 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등

자료: 정부법무공단, 「취약계층의 사용료·수수료 등 감면에 관한 법령정비를 위한 연구」, 법제처, 2011.10.를 참고하여 작성.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의 근거를 동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법적안정성 및 국민의 예측가능성 측면, 요금체계 운영의 탄력성이 저하 가능성 및 유사 입법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전기요금 감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는 다수의 개정안이 회부되어 있으므로 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표 5] 전기요금 감면 관련 법안 계류 현황

구 분 (대표발의, 의안번호)	내 용
김승남의원 2100598	-농수산물 관련 시설, 미곡종합처리장, 그 밖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약관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16조의5 신설).
이규민의원 2103397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의 체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농사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전용기의원 2103697	-전기판매사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요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 신설) -국가 또는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 신설)
황운하의원 2103766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의 사람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16조의5 신설) ①국가유공자, ②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경로당,

구 분 (대표발의, 의안번호)	내 용
	④사회복지시설, ⑤장애인,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경감이 필요한 시설, ⑦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고 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혹한기 또는 혹서기 등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는 감면의 폭을 확대할 수 있음(안 제16조의 5 신설).
전재수의원 2104657	-폭염·혹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17조의3 신설).
구자근의원 2105140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의 체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용전력의 전기요금이 산업용전력의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다음의 사람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17조의3 신설). ①국가유공자, ②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장애인, ④경로당, ⑤사회복지시설, ⑥「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⑦「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기요금의 경감이 필요한 사람 또는 시설, ⑧그 밖에 공익상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또는 시설 -폭염·한파로 인하여 전기요금의 감면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면의 대상 및 폭을 확대할 수 있음.(안 제17조의3 신설)
성일중의원 210679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면제하여야 함(안 제17조의2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 신설)

구 분 (대표발의, 의안번호)	내 용
김용판의원 2107495	-용도에 따라 전기요금의 체계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용전력의 적용을 받는 산업의 범위 등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이장섭의원 210764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인하여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면제하여야 함(안 제17조의2 신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면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7조의2 신설)
하영제의원 21081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농수산물 관련 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하도록 할 수 있음(안 제16조의5 신설). -전기요금 감면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안 제16조의5 신설).
이용빈의원 2109077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내용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후단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요금감면 서비스의 제공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안 제6조제3항 신설)
양금희의원 2109593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제조업 관련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정동만의원 2109997	-다음의 사람 또는 시설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안 제17조의3 신설). ①국가유공자, ②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③경로당,

구 분 (대표발의, 의안번호)	내 용
	④사회복지시설, ⑤장애인, 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제6호에 따라 전기요금의 경감이 필요한 경우, ⑦그 밖에 공익상 전기요금 감면이 필요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사전검토·수수료 및 신고업무 위탁 (강훈식·이소영 의원안)

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사전검토 및 수수료 등(강훈식 의원안)

강훈식의원안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변경신고 및 신고 시 공사계획이 기술기준 및 검사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의 검토와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표 6]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 ----- -----

현행	개정안
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12. 제61조제1항부터 <u>제4항</u>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 14. (생략) ② ~ ⑦ (생략)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 ④ (생략) <u><신설></u>	----- ----- -----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u>제5항</u>----- ----- ----- ----- 13. · 1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이 기술기준 및 검사 방법, 절차 등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미리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의 검토를 받아야</u>

현행	개정안
⑤ (생략)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 3. (생략) ③ ~ ⑤ (생략)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1조제5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필요한 공사계획서의 검토를 받으려는 자 2.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안전공사에----- ----- -----.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제61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별표 5]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 중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한 것, ②인가 받은 사항 중 경미한 변경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 신고가 필요한 것과 ③시·도지사에게 신고가 필요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각각의 경우에 안전공사의 사전기술검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8]), 현재 안전공사는 사전기술검토 수수료는 징수하고 있지 않음.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법률에 안전공사 사전검토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를 예측하기 어렵고 전기설비 공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바, 이에 안전공사의 사전검토와 이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임.

참고로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에 대한 안전공사의 사전검토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련 내용이 존재함.

[표 7] 전기설비 공사계획 사전검토 및 수수료 관련 현행 및 개정안

구 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권한	산업부장관	산업부장관	
		사전검토	○(시행규칙)	법률에 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제8조
		수수료	X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제42조
	신고	권한	안전공사	안전공사	
		사전검토	○(내부규정)	법률에 규정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제8조
		수수료	X	○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 제42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	권한	산업부장관	산업부장관	
		사전검토	○(시행규칙)	법률에 규정	전기사업법 개정안(강훈식의원안) 제61조
		수수료	X	○	전기사업법 개정안(강훈식의원안) 제97조
	경미한 변경 신고	권한	산업부장관	산업부장관	
		사전검토	○(시행규칙)	법률에 규정	전기사업법 개정안(강훈식의원안) 제61조
		수수료	X	○	전기사업법 개정안(강훈식의원안) 제97조
	신고	권한	시·도지사	안전공사	전기사업법 개정안(이소영의원안) 제98조
		사전검토	○(시행규칙)	법률에 규정	전기사업법 개정안(강훈식의원안) 제61조
		수수료	X	○	전기사업법 개정안(강훈식의원안) 제97조

동 개정안에 대하여는 ①사전검토의 법률에의 규정 및 ②수수료 신설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겠음.

우선 사전검토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전기설계협의회와 전기감리협의회(이하 ‘전기설계협의회등’)³⁾ 및 한국기술사회는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신고 시 제출하는 설계도서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술사가 작성하고 이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고 있는바⁴⁾, 안전공사에게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3)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내부 자문기구 형식의 협의체로 설계협의회, 감리협의회, 대행협의회, 상주협의회 등이 있으며, 설계협의회와 감리협의회 외에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음.

4) 「전력기술관리법」

제10조(기술기준의 준수) 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1조(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 등) ①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설계되었는지 검토를 받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일뿐 아니라,

전기분야 최고자격인 ‘기술사’가 설계한 설계도서를 안전공사 담당자가 확인하고 기술적 적합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안전공사 직원의 업무수준 및 노하우에 따라 업무처리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며 설계과정에서의 간섭이 발생할 개연성도 있다는 의견임.

또한 안전공사의 사전기술검토 이후에도 설계변경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설계자는 안전공사의 사전기술검토 이후에는 적극적인 설계변경 등에 참여하지 않고, 안전공사는 사전기술검토 이후에 변경된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바, 설계도서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분산됨에 따라 책임 회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공사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나머지 설계변경은 사용전검사시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임.

다른 전기 분야 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설계도서와 신공법(新工法)·특수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⑧ (생략)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또한 사전검토의 목적은 간섭이 아니라 시공전에 법에서 정한 제출 서류 및 공사계획의 적정성 확인과 설계오류를 포함하여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확보하여 재시공을 방지하고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임

다음으로 사전검토에 대한 수수료 신설과 관련하여, 전기설계협의회 등과 한국기술사회는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는 산업부 또는 시·도지사가 신고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기준으로 허가를 내주는 행정 업무이며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검토의무 부여와 함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참고로 넓은 의미의 수수료는 국민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거나(좁은 의미의 수수료)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경비(사용료)로 볼 수 있음.

공공서비스는 국민의 세금으로 제공되므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①제공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총량에 제한이 있는 경우, ②이용자별로 공공서비스 사용량이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 ③제공되는 공공서비스가 특정지역이나 집단에만 혜택을 주는 등 공공서비스의 무분별한 이용에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경우, ④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기 부적당한 경우⁵⁾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또한 현재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에 대한 인가(또는 신고)를 거쳐 공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반드시 안전공사가 실시⁶⁾하는 사용전검사(제63조)에 합격한 후에 해당 설비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때 안전공사가 수수료를 징수⁷⁾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를 하려는 자는 동일한 설비에 대하여 사전검토 시, 그리고 공사 이후 사용전검사 시에 안전공사에게 수수료를 내게 됨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이 시행('21.1월)됨에 따른 전문적인 검토 필요성 및 ESS 등 새로운 신재생설비의 확산 등 전기환경의 변화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최소한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현재의 사용전검사 수수료에는 사전기술검토 수수료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수행 주체와 업무 내용 또한 다르다는 의견임.

그리고 가스, 의약품 등 다른 분야에서도 허가·승인 전 사전검토를

5)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pp595~602.

6)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사용전검사 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

7) 「전기사업법」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및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최소한의 수수료 부과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임.

[표 8] 분야별 승인·허가 전 사전검토제도 및 수수료 운영 사례

구 분	관련 법령	사전검토 내용	검토 기관	수수료
고압가스	고압가스법 (제11조)	▪ 시설공사계획 승인· 신고 전 사전검토	가스안전공사	부과
액화석유	액화석유가스법 (제34조의2)	▪ 액화석유가스 공사 계획 전 기술검토	가스안전공사	부과
도시가스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제4항)	▪ 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가스안전공사	부과
수도시설	수도법 (제4조제3항)	▪ 수도시설 정비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한국환경공단	미부과 (정부출연금 지원)
의약품	약사법 (제35조의2)	▪ 의약품 허가전 사전 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사전검토팀에 포함)	부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참고로 현재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인가 및 신고 수리현황과 안전공사의 사전기술검토 건수는 아래 표와 같음.

[표 9]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인가·신고 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9월)	평균 증가율 (18년~20년)
인가(건)	인가	137	107	111	65	-10%
	변경인가	11	15	45	17	102%
	소계	148	122	156	82	3%
신고(건)	신고	18,660	31,243	38,525	11,850	44%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표 10]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안전공사 사전기술검토건수

(단위: 건)

구 분	‘18년	‘19년	‘20	‘21년(9월)	평균 증가율 (18년~20년)
기술검토 건수	128	107	481	719	94%
개선 건수	44	38	149	328	84%

* ‘20년도 4월부터 ESS 사전기술 검토 의무화로 사전기술검토 건수 증가함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건수와 수수료는 '20년 기준 39,737건, 약 130억원 정도이며 최근 3년간 증가추세에 있음.

[표 11]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용전검사 건수 및 수수료 총액

구 분		‘18	‘19	‘20	평균증가율
사업용	사용전 검사건수	20,629	32,486	39,737	43.9%
	수수료(천원)	8,853,343	10,526,120	13,065,005	29.6%
자가용	사용전 검사건수	48,009	48,058	46,878	-1.1%
	수수료(천원)	21,247,670	21,002,924	21,072,514	-2.9%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편, 개정안 제12조제1항제12호는 제61조제5항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개정안 제61조제5항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 등은 해당 공사 계획이 기술기준 및 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미리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검토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을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 등은 개정안 제61조제5항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해당 공사계획의 기술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받는 경우에만 허가권자의 공사계획 인가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법 제12조에서 사업허가의 취소 등의 사유로 안 제61조제5항을 규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므로, 개정안 제12조제1항제12호는 삭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부칙에서 개정안 제61조제5항과 관련된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아 개정 규정 시행 전에 허가권자

에게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등을 신청한 자도 안전공사로부터 공사계획의 사전검토를 받고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

나.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업무의 안전공사 위탁 (이소영 의원안)

이소영의원안은 현재 시·도지사가 수행하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업무를 안전공사로 위탁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표 1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략)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 ----- ----- ----- ----- -----.
<신 설>	<u>1의2. 제61조제3항에 따른 공사계</u>

현행	개정안
2. 3. (생략) ③ ~ ⑤ (생략)	<u>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u> 2. 3.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제61조제3항,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제2호가목에 따라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설비 등 일정한 설비⁸⁾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접수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로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개정안이 제안이유 밝힌 바와 같이, 지자체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전기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서의 검토가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 사용전검사 이후 공사계획을 다시 신고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소규모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 등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업무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면 업무 처리의 전문성·효율성 및 전기사업자의 편의 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 전압이 20만볼트 미만인 송전·변전설비 또는 전압이 1만볼트 이상인 공동구(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을 말한다) 및 전력구(전기 관련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의 배전선로

참고로 현재 자가용 전기설비의 신고 수리 업무는 안전공사가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3. 구역전기사업자 의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기준 상향(이학영 의원 안 제92조의2제1항)

이학영의원 대표발의안 제92조의2제1항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기준인 발전설비용량의 상한을 30만킬로와트에서 50만킬로와트로 높이려는 것임.

[표 13]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u>30만킬로와트</u>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 ----- ----- --- <u>50만킬로와트</u>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제92조의2제1항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이 경우 집단에너지사업자를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하고 있음.

[표 14] 관련 조문

「전기사업법」

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1. (생략)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21.(생략)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 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⑥ (생략)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지역냉난방사업을 하는 자로서 15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로서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

이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일정 기준(지역냉난방사업: 15만kW,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30만kW)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사업자는 허가받은 특정한 구역 내에서 자체 열병합발전기 및 배전설비를 갖추고 구역 내 고객에게 열과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음.

동 규정은 2003년 12월에 신설된 것으로, 당시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통하여 발전소건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을 절감하며 전력계통의 안정 및 원활한 전력수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의 한 종류로서 구역전기사업 개념을 신설하는 한편, 일정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경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를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되었음.

이후 2019년 7월,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분산형 전원의 확대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이 개정될 때 ‘분산형 전원’의 정의규정도 신설되었는데, 동법 시행규칙은 분산형 전원에 해당하는 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및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의 상한을 50만킬로와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바,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사업의 내용상 분산형 전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두 기준⁹⁾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상한을 30만킬로와트에서 50만킬로와트로 상향함으로써 분산형 전원의 기준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기존의 기준인 30만킬로와트가 당시 구역전기사업자 의제제도 도입 시점의 용량¹⁰⁾을 토대로 한 것임을 고려할 때, 전력수요 증가 등 변화된 환경과 최근 정부의 분산형 전원 확대 정책¹¹⁾을 고려하여 현재 시점에 맞는 용량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한 측면이 있어 보임.

그리고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향안」(2021.10.18.)에서는 산업단지 열병합 발전시설의 석탄→LNG 발전 전환이 제시되었는데, LNG/수소 등을 활용한 복합화력발전은 열·전기의 비율 중 전기생산량이 큰 특성이 있어, 산업단지에 필요한 열공급을 기존과 동일하게 설계하려면 전기발전의 용량이 더 커져야 하는 구조적 특성이 있음.

따라서 기존의 구역전기사업자 의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설비용량 상한이 친환경 연료로의 전환(석탄 → LNG)에 저해 요소로 작용한다는

9)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상한(30만킬로와트)과 분산형 전원의 정의 규정에 따라 분산형 전원으로 인정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상한(50만킬로와트)

10) 당시 최대규모 자가열병합설비(롯데월드 35MW), 집단에너지설비(지역냉·난방 인천공항공사 127MW, 산업단지 이천열병합 250MW) 규모를 고려하여 설정

11)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2019.6.) :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의 발전량 비중을 2040년에 30%로 제시(2017년 12%)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12.) : 분산형 전원의 비중을 2034년에 20.9%로 제시(2020년 11.9%→2025년 17.3%→2030년 19.0%→2034년 20.9%)

의견이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구역전기사업자로 의제되는 기준인 발전설비용량의 상한이 높아진다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안에 따른 구역전기 의제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설비용량 상한 확대 시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친환경 연료전환 가속화가 기대되고, 그간의 발전설비 효율 확대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용량 상한 재검토가 필요하므로 개정안에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내 주민 수용성, 설비규모 적정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감면하고 있으므로,¹²⁾ 개정안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부담금 수입이 감소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음.¹³⁾

12) 「전기사업법」

제51조(부담금)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13)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총 76개의 집단에너지사업자(31개의 지역냉난방 사업

문 의 처
02)6788-5458

자와 39개의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6개의 병행사업자)가 있으며, 이 중 21개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구역전기사업 특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자료: 한국에너지공단), 현시점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서 허가구역 내에서 전기를 신규로 공급할 집단에너지사업자를 사전적으로 예측하여 동 사업자에 의한 전력 생산량·판매량 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감소액의 추계는 곤란함.

<참고자료 :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

구 분	할인내용	적용기간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월 5.9% 할인	'11.8~'19.12 ('18.2월 연장)
전기자동차 충전전력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요금 50% 할인	'16.3~'22.6 ('19.12월 개정)
주택용 절전할인 (직전 2년 동월대비 20%이상 절감고객)	월 10% 할인 (동·하계에는 15%)	'17.2~'19.12
신재생에너지 (신재생발전 자가소비 산업용·일반용)	자가소비로 절감되는 요금의 50% 할인	'17.1~'20.12 ('17.5월 개정)
	ESS 결합 추가할인 (할인금액의 20~50%)	
도축장 (도축허가 받은 사업장)	월 20% 할인	'15.1~'24.12
ESS 충전전력 (자가소비용 ESS 설치고객)	경부하 충전요금 50% 할인	'15.1~'20.12 ('17.5월 개정)
	피크감축량 해당하는 기본요금 할인 ('20년까지 3배, 이후 1배)	'16.4~'26.3 ('17.5월 개정)
초중고교 (초중고교 및 유치원)	동·하계 6~50%(냉난방) 할인	'14.6 ~ ('17.1월 개정)
	기본요금 당월피크 적용	'16.12~ ('17.1월 신설)
미곡종합처리장 (정부지원 생산자단체 RPC)	월 50% 할인	'16.1 ~ ('18.1월 개정)
천 일 염 (천일염 생산설비)	월 20% 할인	'16.1 ~
주택용 필수사용량 (월 200kWh이하 사용 주거 주택용)	저압 4,000원 고압 2,500원	'16.12~
주택용 하계할인	누진단계별 사용량 확대	-

자료: 한국전력공사

<참고자료 :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

구 분	계약종별		도 입	할인내용(한도)	
				기존	개정('16.12)
장 애 인	주택용		'04. 3	월 8천원 한도	월 16천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상이유공	주택용		'04. 3		
독립유공	주택용		'05.12		
기초생활 수 급 자	주택용	생계 의료	'05.12	월 8천원 한도	월 16천원 한도 (하계 2만원 한도)
		주거 교육		월 4천원 한도	월 10천원 한도 (하계 12천원 한도)
		심 야		'08. 1	감 31.4%,을 20%
차상위 계 층	주택용		'10. 8	월 2천원 한도	월 8천원 한도 (하계 1만원 한도)
	심 야		'08. 7	감 29.7%,을 18%	
3자녀 이 상	주택용		'09. 8	20% (월 12천원 한도)	30% (월 16천원 한도)
대가족	주택용		'07. 1	1단계 낮은 요율 (월 12천원 한도)	
출산가구	주택용		'16.12	-	
사회복지 시 설	일반용		'07. 1	20%	30%
	주택용		'07. 1	21.6%	
	심 야		'08. 1	감 31.4%,을 20%	
생명유지	주택용		'07. 8	1단계 낮은 요율 (월 12천원 한도)	30%

자료: 한국전력공사